

## 사례 연구 자료 이용에 관한 동의서

[마케팅 캠페인] (“캠페인”):

[회사] (“회사”):

회사는 Google Asia Pacific Pte. Ltd. (“Google”) 및 그 계열사들에게 회사를 캠페인에 등장시킬 권한을 부여합니다. “허용정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회사명, 로고, 관련 이미지 및 기타 브랜드 표장;
- 회사 광고와 웹사이트의 관련 스크린샷 및 비디오;
- 회사의 Google 광고 계정으로부터의 데이터;
-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회사의 보도자료 및 인용;
- 회사 직원 인터뷰의 시청각 자료 및 그 스크립트; 그리고
- 캠페인 사용 목적으로 회사가 제공한 기타 콘텐츠.

회사는 캠페인과 관련하여 허용정보를 (a) 직접 복사, 복제, 발표, 각색, 전달 및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의 이러한 사용(비디오, 브로슈어 인쇄본, 웹사이트, 이메일 및 블로그 포스트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허용하고, (b) 본 동의서에 따른 Google의 허용정보 사용에 필요한 모든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세계적, 취소불능, 영구적, 비독점적, 재라이선스가 가능한 권리 및 라이선스를 Google과 그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허여합니다. 캠페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Google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서가 허여하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본 동의서는 별개로 각자가 보유할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Google로부터 어떤 비용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허용정보를 사용하는 캠페인의 모든 부분에 대해 Google은 최초 발표 이전에 사본을 회사에 보내 승인을 받습니다 (회사는 비합리적으로 승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캠페인에서 파생된 작업물에 대해서는 Google은 사본을 회사에 보내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하기 서명인은 본 동의서를 체결할 완전한 권한(허용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와 라이선스를 허여할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가지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본 동의서의 각 당사자는 전자서명을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의 본 동의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USD 1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본 동의서는 국제사법 원칙을 제외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당사자들은 본 동의서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분쟁”)도 30일 내에 해결하도록 신의로써 노력할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은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에 의해 본 동의서 체결일 기준으로 효력이 있는 급속 상업 규칙(Expedited Commercial Rules)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 1인으로 합니다. 중재는 영어로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당사자는 중재가 종결될 때까지 관할권 있는 모든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이 선고한 모든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그에 대한 판결은 모든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본 동의서에 규정된 제한 및 구제수단과 부합하는 형평법적인 처분 또는 금지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중재와 관련하여 공개된 모든 정보(중재 존재 사실 포함)는 비밀정보입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중재판정 또는 결정의 집행 청구 혹은 본 동의서의 조건 하에서 허용된 구제수단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를 비밀유지 제한 하에 적절한 법원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기 서명일에 합의하였습니다.

---

 서명

---

 성명

---

 서명일

---

 이메일 주소

